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효율적인 보훈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4조)

- 당초 : 월 8만원 → 변경 :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및 단서 조문 신설(안 제5조 1항)

- 당초 : 매 분기 다음달 → 변경 : 매월 말일
- 신설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전 근무일에 지급

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변경(안 제6조 1항)

- 당초 : 매 분기 마지막달 → 변경 : 매월 말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조례 제 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8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 분기 다음달”을 “매월 말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6조제1항 중 “매 분기 마지막 달”을 “매월 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급	1. ----- ---월 10만원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 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 ----- ----- 매월 말일----- ----- -----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 -----매월 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참전명예수당을 타시군 형평성과 예우에 맞게 인상 조정함에 따라 세출발생 (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 2024년까지 6,42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참전명예수당	1,452,000	1,380,000	1,296,000	1,200,000	1,092,000	6,42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1,452,000	1,380,000	1,296,000	1,200,000	1,092,000	6,420,000
민간						
기타						
합계	1,452,000	1,380,000	1,296,000	1,200,000	1,092,000	6,420,000

5.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참전유공자의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가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정책과 김익기 (480-510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인원이 2020년 1,210명, 2021년 1,150명,
2022년 1,080명, 2023년 1,000명, 2024년 91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참전명예수당 산출내역

- 2020년 : 1,21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452,000,000원
- 2021년 : 1,15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380,000,000원
- 2022년 : 1,08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296,000,000원
- 2023년 : 1,00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200,000,000원
- 2024년 : 91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092,000,000원

소관 실·과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변 동 석
	담 당	윤 희 선
	담 당 자	김 익 기 (480-5102)